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동 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교육,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등을 추가(안 제6조 제4호)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6조의2) 하였습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보다 향상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